학습자료(경비원직무교육_경비보안)

■ 1차시 특수경비제도의 이해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유도경비업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가급 국가중요시설
-청와대/국회의사당/국제공항
-중앙행정기관의 청은 「다」급 국가중요시설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선장에게 적용한 죄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부자위에 의한 살인죄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소유권자는 국가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하고, 무기의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여 국가에 기부 채납된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 자(특수, 일반 공통) /만 60세 이상인 자/ 팔 또는 다리가 불완전한 자/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2 미만이고 교정시력이 각각 0.8 미만인 자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권총 및 소총(경비업법 시행령 제20조 5항)

■ 2차시 민방위

*민방위제도의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제도의 본질적 내용
-주민의 자위 활동/ 인도적 활동/ 비군사적 활동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사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가적 재난사태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에게 연 4시간 실시
-편성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대상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
-민방공경보는 경계·공습·화생방·해제경보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매년 3월, 8월, 10월에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 중 8월 민방공훈련은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의 화학공격 시 행동요령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화학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건물 상층부나 고지대로 대피
-실내로 대피할 때에는 창문, 출입문을 밀폐한다.
-건물 내 모든 공조시설, 환풍기는 끄고 공기 흡입구를 닫는다.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경보 신호 경계경보
-경계경보시 라디오로는 사이렌을 울리며 음성 방송을 하고, TV, DMB로는 문자방송을 하고, 경보 단말 시설에서는 1분간의 평탄 음의 사이렌을 울리며, 옥•내외 방송시설(확성기)로는 반복적인 음성 방송을 한다.

*화학전, 생물학전, 핵•방사능전을 총칭하는 개념은 화생방전
-독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물학전, 핵무기나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핵•방사능전을 총칭하여 화생방전이라 한다.

■ 3차시 테러대응 1

*사이버 테러의 특징
-기존의 테러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전통적 테러 방식보다 높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테러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
-기존의 테러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각국의 대 테러관련법이나 국제협약 등에서 테러를 정의한 공통 요소
-테러는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
-테러가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쟁의 선행조건은 아니다.
-테러는 미리 계획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테러는 공포심을 수반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르는 행위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론: 대부분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테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 테러의 원인을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 찾는다.

*국가의 지배자가 자기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고 그 통치·지배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집행적인 테러인 체제 테러
-비밀공작원의 테러/ 공무집행 형태의 테러/ 대량살육 형태의 테러
-범죄단체의 테러는 반체제 테러의 일종입니다.

*현대사회구조 이론에서 테러의 발생을 촉진하는 현대사회의 환경
-고도의 도시집중화/ 고도화된 교통체계의 존재/ 대중전달 매체의 발달
-현대사회구조 이론에서 자유민주주의 발달은 테러 의 발생을 촉진하는 현대사회의 환경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이버 테러의 도구 내지 방법
-해킹/ D Dos(분산거부서비스)/ 악성코드컴퓨터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은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컴퓨터 포렌식은 사이버 범죄자 추적 및 조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항공기 자살테러항공기 자살테러: 9·11테러에서 사용한 신종 테러 수법으로 항공기를 폭탄처럼 고층건물에 충돌·폭파시킨다.

■ 4차시 테러대응 1

*9.11테러 사건 전후 등장한 뉴테러리즘의 특징
-요구 조건이나 공격 주체가 불명하여 추적이 곤란하다.
-전쟁 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테러를 위한 별도의 장비가 없어 보안검색이 어려워 방어가 곤란하다.
-테러의 규모의 대형화

*화학물질이 유포된 현장에서의 행동요령
-즉시 방독면을 찾아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오염지역 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옆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오염된 실내에서는 신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구역에 있던 사람은 가능한 한 오염구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주의 단계: 관계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테러 대상 시설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IS는 2015년 6월 튀니지에서 총기난사 테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터키 앙카라 역 자살폭탄 테러, 러시아 여객기 추락 테러, 레바논 베이루트 시아파 헤즈볼라 거점 연쇄 폭탄 테러, 프랑

스 파리 연쇄 테러 등 전방위적인 테러 활동을 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원칙
-테러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의 배제
-테러에 대한 기피 유도
-국제협력 강화

* 생물무기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살상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빈자의 핵무기라고 불린다.

■ 5차시 분사기

*액체 분사기의 장·단점
-효과음으로 인해 위해자의 2차 행동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
약제의 소모가 심하지 않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소지하기 간편하다.
비가 올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
분사 범위가 좁고, 유효 거리가 3~5m 정도로 짧다.

*분말 분사기의 장·단점
-유효기간이 20~2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다.
-발사시 약제의 분산으로 다수의 위해자를 제압할 수 있다.
-분말 분사기는 발사 시 바람의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할 경우 약제가 굳게 된다.

*경비회사가 분사기를 소지 허가 신청을 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용 소지허가 신청서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면허증 사본)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분사기의 조준 요령
-신속히 분사기를 꺼내고 두 다리는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다.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분사기를 파지한 후 목표물을 향한다.
-약제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지한 손을 신체로부터 가급적 멀리 이격한다.
-가늠자와 가늠쇠를 범인의 인중에 일치시킨다.

*경비원이 분사기 사용 시 지켜야 할 비례원칙의 내용
-경비원은 분사기를 경비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적합성 원칙),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방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필요성 원칙), 상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상당성 원칙)
-필요성의 원칙: 경비원이 분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방어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한다는 원칙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로 경비업법에 규정된 것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로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 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방탄복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분사기의 종류로 규정된 것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분사기, 기타 휴대형 분사기로 분류하고 있다.

*분사기 사용 순서: 해제 -위치선정-조준-분사
-분사기 사용 시 우선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위치 선정을 한다.

■ 6차시 기타장비-CCTV 등

*CCTV의 역할
-범인의 용이한 발견과 체포/ 범죄에 대한 불안 감소/ 증거 능력의 확대와 증명력의 향상
-CCTV의 문제점으로 사생활 침해가 지적된다.

*반이중(半二重) 통신방식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전기의 통신방식으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주고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상대가 하는 말은 끝까지 듣고서 말할 수 있다.
*전이중(全二重) 통신방식: 신 주파수와 수신 주파수를 별도로 두어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방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전자 충격기의 허용 전압은 허용 전압은 6만 볼트 이내로 매우 높은 반면 전류는 수 mA로 매우 적기 때문에 치명적인 살상 능력은 없으나,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니 방어용도로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등의 개발로 CCTV를 통한 감시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CCTV 감시비용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CCTV를 수사 또는 범죄 예방활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 충격기의 종류
-총포형 전자 충격기, 막대형 전자 충격기, 기타 휴대형 전자 충격기가 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3)

*지능형 CCTV

-최근에는 구조요청이나 차량 충돌 소리를 감지해 알람을 울리고 관제센터에 알려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즉시 출동시킬 수 있는 지능형 CCTV도 개발·보급되고 있다. 또한 사전에 입력된 생김새와 체형 등으로 실종자를 찾거나 항공 탑승 거부자 등을 찾아낼 수 있는 CCTV도 나와 활용되고 있다.

■ 7차시 체포호신술

*체포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와 구속은 기간상의 차이만 있다.

*호신술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해오는 경우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공격을 봉쇄하고 방어하는 수동적의 기술
-몸 전체를 이용하는 기술.
-호신술에서는 상대의 힘에 순응합니다가 상대방 힘의 흐름을 순간 역이용하여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체포 호신술시 주의 사항
-지형지물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흉기로 저항하는 범인에 대해서는 먼저 흉기를 쳐서 떨어뜨려야 한다.
-범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주범 또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범인을 우선 제압해야 한다. 다만, 경비원이 수적으로 열세인 경우에는 종범 또는 저항의 강도가 낮은 범인을 먼저 체포한다.
-범인을 완전히 제압·체포한 후에도 범인의 거동 및 주위의 상황에 주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합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체포술 습득을 위해 필요한 준비
-정신적 준비/육체적 능력/안전관리 능력

*체포 호신술의 기본 원리
-예리하고 신속한 판단/완벽한 제압/ 과감한 동작

*낙법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몸통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넘어지는 기술이다.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여 체포 호신술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낙법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좋다.

*준현행범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
-형사소송법에서는 (1)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이거나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거나 (3)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이거나 (4)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위 4가지 경우만 준현행범에 해당되며,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 8차시 경비보안업무

*출입통제
-경비 계획은 크게 1차 보호 시스템인 외부 출입통제와 2차 보호 시스템인 내부 출입통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출입통제의 목적은 경계구역에 대한 부적절한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부 출입통제의 주요 목적은 시설물 내의 침입이나 절도, 기타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외곽 경비 등에 의해 일단 외부로부터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단계로서 내부로의 출입 통제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 출입통제 중 외부 방문객 통제
-내부 시설을 방문한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원확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정 없이 방문하는 방문객의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중요 구역을 이동하는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및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개별적으로 안내하거나 기타의 감시 장치를 활용한다.
-시설물의 중요성에 따라 외부 방문객에 대해서는 이동지역을 제한해야 한다.

*야간 감시 원칙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적응시, 물체를 약간 비껴보는 이원시, 물체의 주변을 움직이면서 보는 주변시가 있다.

*경비초소 근무자의 수칙
-담당구역 경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보고한다.
-근무 중 일어났던 일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근무 위치를 떠나서 안 되며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창문 경비시 고려할 사항
-외부 침입자들이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에 대한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외부 침입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창문에 대해서는 강화유리, 외부 침입 감지시스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내부에서 쉽게 뜯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창문에는 화재 및 방재 시스템 또한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 대상자 발견 요령
-태도, 거동으로부터 발견 / 휴대품을 통해 발견/ 장소적 상황으로부터 발견
-일반적인 경우 이름을 통해 불심검문 대상자를 발견할 수는 없다.

*무기고의 일반 근무수칙
-정기적인 무기 탄약 조사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유사시 긴급한 사유로 무기탄약고에 출입하거나 무기 탄약을 출고할 때에도 즉시 소속 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경계 및 감시 구역을 설정하고 경계근무를 철저히 한다.
-무기고에 대해서는 항상 외곽 경비 및 유동순찰을 한다.

*불심검문의 판단요소는 수상한 거동과 주위의 사정
-불심검문의 판단요소는 수상한 거동과 주위의 사정이며,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